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16
----------	------

제출일자 : 2022. 6.

제 출 자 : 달성군수



1. 제안이유

달성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중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의 효율성 및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농기계임대사업 이용 대상 기준 명시 (안 제3조 제4호)
- 나. 농기계안전사고 대비 임대농기계 보험가입 의무화 (안 제5조 제3항)
- 다. 임대료 납부 방법 신용카드 결제 추가 (안 제7조 제1항, 제10조 제3항)
- 라. 임대기간 및 운영시간 명확화 (안 제8조 제1항, 제2항)
- 마. 임대료 부과 기준, 임대료, 기종선정 방법 변경 (안 제10조 제1항)
- 바. 임대자의 책임 범위 변경 (안 제13조 제4항)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 (1) 농업기계화촉진법 제8조의2 제5항
- (2)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규칙 제2조의2 제2항

나. 예산조치 : 2023년 본예산 반영 예정

다. 기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2) 입법예고(2022. 4. 26.~ 5. 16.) 결과 : 의견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5)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6) 부서합의 : 해당사항없음
- (7)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를 제외한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농기계 임차인(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이란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경작지가 달성군에 있는 자로서 군수에게서 농기계를 임대받아 사용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군수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임대농기계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신청서”를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출하여”를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신용카드 결제로 납부하여”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임대는 1회(1회의 기간은 2일, 이하 같다)를 원칙으로 하되, 사용 대기신청자가 없을 경우 1회씩 연장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제 1회 임대기간이 2일이 되지 않더라도 2일을 임차한 것으로 본다.

제8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3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임대사업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임대대상 농기계의 임대료는 별표 1과 같으며, 임대대상 농기계 기종 선정은 수요조사를 통해 농업인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제3항 중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를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신용카드 결제로 납부하여야”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모든 책임을 진다”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대장의 비치) 농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농기계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농기계 사용 신청대장(별지 제3호서식), 임대료 수납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에는 전산 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별표 1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기계임대 연장기간 및 임대료의 적용례)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이 조례 시행 후 그 임대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u>정의</u> 는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농기계 임차인(이하 “임차인” 이라 한다)이란 <u>군수에게서 농기계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농업인을 말한다.</u>	제3조(정의) ----- ---- <u>뜻은</u> -----. 1. ~ 3. (현행과 같음) 4. ----- <u>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경작지가 달성군에 있는 자로서 군수에게서 농기계를 임대받아 사용하는 농업인을 말한다.</u>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 ② (생략) <신설>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군수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임대농기계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u>
제7조(임대절차 및 기준) ①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도의 <u>신청서</u> 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임대사용 고지서를 발부받아 임대사용료를 <u>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출하여</u> 사용허가를 받은 후 계약서상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7조(임대절차 및 기준) ① ----- <u>신청서(별지 제1호서식)</u> ----- ----- ----- <u>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신용카드 결제로 납부하여</u> ----- -----. 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8조(임대기간 및 교육) ① <u>임대기간은 2일을 1회로 하며 입고 시간은 일몰시까지로 한다. 다만, 사용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u> <신설> ② ~ ③ (생략)	제8조(임대기간 및 교육) ① <u>임대는 1회(1회의 기간은 2일, 이하 같다)를 원칙으로 하되, 사용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 1회씩 연장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제 1회 임대기간이 2일이 되지 않더라도 2일을 임차한 것으로 본다.</u> ② <u>임대사업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u> ③ ~ ④ (현행 ② ~ ③과 같음)
제10조(임대대상 농기계 선정 및 임대료 등) ① <u>임대대상 농기계의 임대료는 구입 가격 농가부담 등을 감안하여 농기계 구입가격의 0.2%로 하며 천원단위 미만은 절사하고, 임대 대상 농기계 기종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군수로부터 위임을 받아 농업인 및 농민단체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기초로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다.</u> ② (생략) ③ <u>임대료의 납부는 납입고지서에 의거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u> ④ (생략)	제10조(임대대상 농기계 선정 및 임대료 등) ① ----- <u>별표 1과 같으며, 임대대상 농기계 기종 선정은 수요조사를 통해 농업인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u> ② (현행과 같음) ③ ----- ----- <u>납부하거나 신용카드 결제로 납부하여야 한다.</u> ④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13조(임차인의 책임) ① ~ ③ (생략) ④ 농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인 적·물적 피해 사고 등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u>모든 책임을 진다.</u>	제13조(임차인의 책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u>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u>
<신설>	제17조(대장의 비치) <u>농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관리·운영 을 위하여 농기계 관리대장(별지 제2 호서식), 농기계 사용 신청대장(별지 제3호서식), 임대료 수납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 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할 경 우에는 전산 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 다.</u>

[별표 1]

가. 농기계 임대료

농기계 구입가격	임대료(1회당)
1) 100만원 미만	5,000원
2)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6,000원
3)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7,000원
4)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9,000원
5)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11,000원
6)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14,000원
7)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16,000원
8) 7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18,000원
9) 8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20,000원
10) 9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23,000원
11)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32,000원
12)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42,000원
13) 2,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	55,000원
14)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65,000원
15) 3,000만원 이상 3,500만원 미만	80,000원
16) 3,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92,000원
17) 4,000만원 이상 4,500만원 미만	97,000원
18) 5,000만원 이상	105,000원

나. 포대 단위 사용 농기계(콩선별기) 임대료 : 1포/40kg 당 1,000원

다. 농기계상하차 보조구(농기계사다리)임대료 : 무료

농기계 임대 신청서

사 용 신청자	이 름	
	주 소	
	연 락 처	
사 용 신 청	농기계명	
	수 량	
	임 대 료	
	임대기간	
사 항	작업종류	
	작업면적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에 의거 임대농기계를 위와 같이 임대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또는 서명)

달성군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

농기계 임대조건 및 준수사항

1. 위 임대신청 농기계는 농업용으로만 사용하고 임대기간을 지켜야합니다.
2. 임대료의 납부기간은 임대허가일로부터 임대일 전까지입니다.
3. 농기계 작업종료 후 청소 및 세척 등을 통하여 반환하고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고장유무에 대하여 소속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임대농기계를 농작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영업행위, 사용신청사항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사용허가를 취소하게 됩니다.
5. 사용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받습니다.
6. 사용자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변상하여야 합니다.
7. 농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8. 임대농기계의 구조 및 성능을 변경하여서는 안됩니다.

농기계 관리대장

연 번	기종명	제조회사	모델명	기대번호	규 격	수 량	구입가격(원)	구입일자	내구연한	비 고

93

임대료 수납대장

연 번	계 약 연월일	임 대 농 가			임대 농기계		임대기간	임 작 면적(m ²)	감면액 (원)	임대로 (원)	수 납 확인자	비 고
		성 명	주 소	기종명	대 수							
										</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8조의2(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⑤ 임대사업용 농업기계의 종류, 임대료 및 임대사업 운영기준 등이 포함된 임대사업 시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농업기계의 임대사업)

② 법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임대사업 시행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19. 6. 25.>

임대사업 시행기준(제2조의2제2항 관련)

1. 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

가. 농업기계의 1일 임대료는 농업기계의 구입가격에 따라 아래의 산정방식으로 산정한다.

농업기계 구입가격	1일 임대료
1) 100만원 미만	10,000원
2)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2,000원
3)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5,000원
4)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9,000원
5)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23,000원
6)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28,000원
7)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32,000원
8) 7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36,500원
9) 8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41,000원
10) 9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46,000원
11)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65,000원
12)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85,000원
13) 2,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	110,000원
14)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130,000원
15) 3,000만원 이상 3,500만원 미만	160,000원
16) 3,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185,000원
17) 4,000만원 이상 4,500만원 미만	195,000원
18) 5,000만원 이상	210,000원

나. 가목에 따른 농업기계 1일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농업기계를 30일 이상의 중·장기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가목에서 산정한 1일 임대료의 ± 30 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달리 정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농업기계의 상태 및 지역 임대료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를 가목에 따라 산정한 임대료의 ± 15 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2.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지역실정에 맞는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실시한다.

3. 임대사업용 농업기계에는 관리번호를 부착하여 관리한다.

4. 그 밖에 임대사업에 필요한 세부 시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1. 사업개요

고가의 농기계를 저렴한 수수료로 임대함으로써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여 경영비 절감을 통한 소득 향상에 기여하며, 기계화 영농으로 농촌의 일손부족 해결 및 농업의 경쟁력 강화

2. 비용 발생 요인

농기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임대 농기계 보험에 가입 조항 신설

3. 관련조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 제3항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보험가입비 : 3개소 × 200대 × 100,000원 = 60,000천원 / 년간

나. 추계 결과 : 300,000천원 정도 / 5차년도

○ 대구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시행에 따른 임대농기계 보험가입 비용은 5차년도 까지 총 300,000천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예산 300,000천원 정도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붙임

6. 작성자 : 농촌지도과 농기계작물팀장 조현정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 원)

구 분		1차년도 (2023)	2차년도 (2024)	3차년도 (2025)	4차년도 (2026)	5차년도 (2027)	계
세 입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300,000
지 방 세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300,000
의존재원		-	-	-	-	-	-
세 출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300,000
사무관리비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300,000
재원 조달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300,000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300,000
	지방세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300,000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특별회계		-	-	-	-	-	-
군 비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300,000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	-	-	-	-	-

